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0,000,000	14,700,000
일반회계	434,000,000	13,020,000
일반회계	434,000,000	13,020,000
기타특별회계	43,300,000	1,299,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00,000	36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281,634	68,449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50,882	64,52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10,000	27,3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220,000	66,600
주택사업특별회계	740,000	22,2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550,000	16,5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810,000	84,300
치수사업특별회계	3,059,484	91,785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870,000	176,100
대지보상특별회계	413,000	12,39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95,000	8,8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000,000	300,000
공기업특별회계	12,700,000	381,000
공기업특별회계	12,700,000	381,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91,89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